「국제법무」 제9집 제2호, 2017. 11. 30.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한중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in Korea and China

서 련*
XU LIAN

목 차

Ⅰ. 과소자본세제 도입목적
Ⅱ. 한중 과소자본세제 개관
Ⅲ. 사례를 통한 양국세제의 효과 분석
Ⅳ. 한중 과소자본세제 적용범위의 차이점
Ⅴ. 결론

국문초록

과소자본세제는 내국법인이 부채비율을 높여서 이자지급의 형식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책이고 또는 기업의 재무구조 중 비합리적인 부채비율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을 유지하는 조세정책이다. 오늘날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은 대부분 과소자본세제를 마련하였으며 그 형식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는 이자를 받아가는 자의 내외를 불문하고 비거주자 외에 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유달리 비거주자에 국한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한중 양국 현행법 규정에 근거하여 가상사례의 형식을 통하여 양국세제의 효과

논문접수일 : 2017. 09. 30.
심사완료일 : 2017. 10. 19.
게재확정일 : 2017. 10. 20.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중국 Dentons Dacheng 로펌 변호사

를 분석하며 한중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가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과소자본제제가 외국인투자기업만을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의 조세체계가 국제조세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이자를 지급받는 자를 내외로 구분하여 각각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등 국내법 규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과소자본세제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외국법인을 내국법인에서 따로 떼어 내지 않고 통일한 기업소득세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국조법과 같은 별도의 규범체계는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중국의 과소자본세제는 국제간 자본이동 외에 내국인간의 투자활동까지 적용되므로 그 적용범위가 아주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 과소자본, 과소자본세제, 한국, 중국

Ⅰ. 과소자본세제 도입목적

1. 조세수입확보

자본조달의 비용과 관련하여 일반화된 과세원칙을 살펴보면 기업이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 즉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납세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기업이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 즉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특별히 법령에 제한이 있지 아니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출자형식보다는 대출형식으로 투자를 할 것을 선호하고, 그 결과 납세자의 과세소득이 감소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수입 일실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러한 차입거래는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다국적기업들 간에 이루어진다. 모회사 본국은 자국의 법인에게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면제

세제를 택하는 경우 해외자회사가 원천지국에서 납부하는 법인세가 그대로 모회사에 대한 최종적 세부담이 된다. 이로 인하여 다국적기업들이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 함은 당연한 일이다. 설령 모회사 본국의 세제가 외국납부세액공제인 경우에도 공제한도 따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은 오히려 보편적이다.[1]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대개 비거주자에게 과세되지 않거나[2]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되기도 한다.[3] 요컨대 다국적기업이 해외진출과정에서 출자형식보다 채권채무라는 형식을 많이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부채/자본 비율을 이용하여 이자지급 형식으로 이익을 타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원천지국의 세원잠식(base erosion)을 낳을 수 있다.[4]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출자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는 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과소자본세제'를 두고 있다.[5] 즉 과소자본세제의 도입 목적은 주로 과세당국의 조세수입확보인 것으로 해석된다.[6]

---

1) 이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이창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5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3) 참조.

2) 예를 들면 OECD 30개 회원국 중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아일랜드 등 14개국은 외국인의 국채 투자 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다. 중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한국 국세청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세원잠식은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세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세수확보, 조세주권, 조세공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OECD 2013년 3월 19일 발간한 국제적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보고서 참조.

5) 오늘날 각국의 과소자본세제의 내용을 소개한 글로는, Stuart Webber, Thin Capitalization and Interest Deduction Regulations, Copenhagen Research Group on International Taxation, Discussion Paper No. 8, 2010 및 OECD, Thin Capitalization Legislation: A Background Paper for Country Tax Administrations(Initial Draft), 2012 참조.

6) 미국이 1989년 과소자본세제인 연방세법(IRC) 제163조(j)를 제정할 당시의 국회보고서는 이러한 입법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HR Rep. No. 247, 101st Cong. 1st Sess. 1241 (1989). 미국의 과소자본세제 입법사에 관해서는, Kuntz&Peroni, U.S. International Taxation, WG&L, 2015, ¶C3.04[5][d] 참조.

2. 건전한 자본시장 유지

실은 기업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려는 요인이 반드시 조세회피목적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운영의 전제하에서, 이윤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정 자산부채비율의 범위 내에서 부채를 안을 시 적정선까지는 상대적으로 부채를 사용하여 기업의 자산수익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다.[7] 이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현상이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보다 대여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유동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다. 그 이유는 자금 대여 시 기업이 대출금을 자유롭게 상환하도록 할 수 있지만, 반면 출자의 경우에는 회사법에 따른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 없이는 지분투자금액을 상환(주식을 상환 또는 자본을 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8] 또 하나의 이유는 원본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이다. 가령 투자자가 기업의 지배주주가 아닌 이상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가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결의한다면 당장 투자원본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9] 반면 대여형식의 경우 채무이행일이 계약에 확정되어 있는 까닭에 즉시 투자수익을 얻지 못할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 또 배당소득의 경우 경제적 이중과세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지만 이자소득은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채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일 유인이 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모든 자금조달에서 법인세 절감효과가 존재하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파산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부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부채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대출자 입장에서도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정 규모 이상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10] 그러나 차입

---

7) Phillip R.Daves·Michael C.Ehrhardt·Ronald E.Shrieves, Corporate Valuation: A Guide for Managers & Investors,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6면.

8) 한국 상법 제345조(상환주식의 상환), 제343조 단서(주식의 이익소각) 참조. 중국 현행 회사법도 자본감소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회사법 제36조, 38조 제1항 제7호 참조.

9) 한 예로서, 중국 현행 회사법 제18조에서 주주총회가 배당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徐洪才主编 ,「中国资本运营经典案例(下册：问题篇)」, 清华大学出版社 , 2005년, 221면.

자인 기업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은 부채 또는 이자의 지급시기 등의 조정을 통하여 파산위험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이상의 부채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이자의 과다공제 제한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차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자본구조의 조정을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주체인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지는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국가 경제의 장기 불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11] 이런 측면에서 과소자본세제는 기업의 자본구조 가운데 불합리한 부채비율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의 운영을 유지하는 목적도 아울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Ⅱ. 한중 과소자본세제 개관

투자자금의 자기자본화를 유도하며 투자형식의 인위적인 조정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자는 생각에서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은 대부분 과소자본세제를 마련하였다. 한국과 중국도 그 예외가 아니다. 그 내용의 뼈대는 크게 다르지 않아 차입금에 일정한도를 두고 한도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이다.[12]

1. 중국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법적 규정

2008년 전에 중국의 기업과세체계는 대외(對外)세제와 대내(對內)세제라는 이원화된 과세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1993년 '국무원(國務院)'에서 공포한 「기업소득세잠정조례」(企業所得稅暫定條例)를 적용하는

11)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를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중국 경제도 과도한 부채로 미국의 美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최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罗慰年 ,「半资本论：半资本主义与中国社会」, 世界华语出版社 , 2016년, 307면 참조.

12) 이창희, "과소자본세제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법학」 제28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년, 64~65면.

반면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1991년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공포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을 적용하였다.

중국은 1979년 이래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해오면서 수십 년의 경제개발 단계 동안 외국인투자유치의 확대를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조세특혜를[13] 부여하였다. 이런 외국인투자 촉진세제는 첨단기술 도입, 일자리 창출 등으로 중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14] 그러나 이런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제도는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오랫동안 세수의 초(超)국민대우(super-national treatment)를 누리게 함으로써[15] 조세부담의 공평훼손은 세제 전체를 흔들게 되었다.[16]

외국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극론에도 불구하고, 내·외자기업 간에 차별 대우를 해소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실현 또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국은 2007년 3월 16일에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업소득세법(企業所得稅法)」을 제정하여 제2063호 주석령(主席令)[17]으로 공포하였다.[18] 따라서 중국의 이원적인 기업과세체제는 2008년에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시행함에 따라 깨졌고 전에 외국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던 조세우대 조치를 내자기업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통합조세체계의 구축으로 내·외국법인에 대한 세법 적용은 동등해졌다.

그러나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이 축소됨에 따라 중국 진출 자기업의 실제적 조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고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왔다. 이런

13)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이 특정 분야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 첫3년간의 수입은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 감면하는 소위 '兩免三減半' 정책.

14) 중국 國家統計局에서 발표한 「2007년 中國統計年鑑」에 의하면 2006년 말까지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사용기준)이 6,191억 달러에 달해 세계3위의 외자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15) 예를 들면,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의 제정으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전에 내자기업은 24%의 평균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외자기업은 14%의 평균세율을 적용하였다. 「2005년 中國統計年鑑」 362면.

16) 李国建 , 「税收制度改革与发展研究」 , 山东人民出版社 , 2004년, 122면. 또는 范昕林, 易娜, 周冬丽, "实行统一的法人所得税的必要性, 加行性和紧迫性", 「税务研究」 2006년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17)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한다.

18) 刘剑文主编, 「财税法学前沿问题研究5 : 法制财税与国家治理现代化」, 法律出版社, 2016년, 24면.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목적으로 외자기업들이 조세회피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외국법인의 조세회피행위는 중국에 엄청난 조세수입일실의 문제를 초래한바, 중국 국세청에서 공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신기업소득세법의 시행부터 2014년까지 외국기업이 각종 수단을 통하여 외국으로 이전한 누적소득금액은 매년 평균 500억 위안(약 8.3조원)을 초과하였다[19].

여러 가지 조세회피행위 중 과소자본 행위는 기타의 조세회피수단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과 더 깊은 관련이 있어 국세청(국)이 정보를 획득하기 쉽지 않은 탓에[20] 이를 이용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미 제1장 제1절에서 말했듯이 2011년 이후 조세회피방지의 관리에 관한 중국 당국의 관심은 이전가격세제에서[21] 과소자본세제로 옮겨가 이를 적용한 과세처분 사례[22]도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는 내국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23]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은 세원잠식(base erosion)을 막기 위하여 대부분 과소자본세제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8년 신 기업소득세법의 제정 당시에 이르러서야 과소자본세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6장 '특별납세조정(特別納稅調整)' 제46조에서는 기업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채권성투자[24]와 권익성투자[25]의 비율이 세법에 규정한 기준을

19) http://www.chinatax.gov.cn/n810219/n810724/c1507274/content.html 방문날짜: 2017.4.12.

20) 대부분 나라의 과소자본세제는 국외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만을 단속한다. 즉 투자자가 피투자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이상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비록 국외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해당 국외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금융기업의 개입으로 특수관계기업간의 차입거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세무조사 과정 중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21) 刘剑文,「国际所得税法研究」,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0년, 145면.

22) 2011년 11월 25일 중국 산서성(山西省) 국세국이 일본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자회사의 과다보유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1100여만 위안(약 18여억원)의 기업소득세를 추징하였다.
http://blog.sina.cn/dpool/blog/s/blog_9aa89db10100xb3x.html 방문날짜: 2017.4.12.

23) 예를 들어 2014년 중국 감숙성(甘肅省) 란주시(蘭州市) 국세국은 어떤 내자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기준초과 이자를 손금부인하면서 114.7만 위안(약 2억5천만원)의 기업소득세를 추징하였다.
http://www.chinatax.gov.cn/n810219/n810739/c1134670/content.html 방문날짜: 2017.4.12.

24) 한국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을 중국 조세법상에서는 '채권성투자'라고 부른다. 중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제119조에 의하면 채권성투자란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조달한 정상적인 채무, 곧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 또는 그에 유사한 성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출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세법으로는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 등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하위 법령이 있으며,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 및 「일반조세회피관리방법」 등 국무원에서 수권하여 제정한 '부문규장(部門規章)'도 과소자본세제 관련 세법체계에 포함된다. 이런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명칭	주요내용
법률	企業所得稅法	과소자본세제의 정의 (제46조)
행정법규	企業所得稅法實施條例	채권성투자·권익성투자의 정의 (제119조)
부문규장	特別納稅調整實施謗法(試行)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계산방법, 소득처분 등 (제85조-91조)
규범성문건	財稅[2008]121號	세제적용기준
	國家稅務總局公告[2016]제42號	특수관계인의 범위, 실제지배 여부 판단 기준,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체적으로 상위법인 기업소득세법과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고 함)에서는 주로 과소자본세제의 기본적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26]

갖는 방식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융자를 의미한다.

25) 중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119조에 의하면 '권익성투자'란 기업이 취득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고 출자자가 기업의 순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투자를 말한다. 이것은 한국 과소자본세제 중에 차입금과 비교대상이 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26) 일반적으로 중국 세법의 법원(法源)은 법률적 지위대로 헌법-조세법률-조세행정법규-부문규장 및 지방성법규-기타 규범성문건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조세법률은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중국 세법의 주요한 법원이다. 조세행정법규는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한 것으로서 현재 중국의 가장 중요한 세법의 법원을 구성하고 있다. 국무원 소속 각 부서는 조세부문규장과 규범성문서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정부, 국세국, 해관총서 등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론상으로는 전자의 효력은 후자보다 높다. 상세한 것은 환진형,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정에 따른 입법적 시사점 검토" 제2장 참조.

그러나 이들은 포괄적인 개념을 통하여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요건, 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부(財政部) 또는 국세국 등 국무원의 조세관련 주관부서에서 제정한 하위법인 '기업관련방 이자지출 세전공제표준(企業關聯方利子支出稅前控除標準, 財稅[2008]121號, 이하 '121호문'라고 함)' 및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시행)(特別納稅調整實施謗法(試行), 이하 '시행방법'라고 함)에서는 각각 과소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채 대 자본비율기준, 손금불산입 이자의 계산방법,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른 세무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과소자본세제(資本弱化管理)'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시행방법은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할 뿐만 이니라 차입금과 이자의 범위, 자기 자본의 계산 또는 귀속시기 등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전에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상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만 있었고 세무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의 횡행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일정 정도 완화하게 되었다.

이밖에 과소자본세제 관련 규범성 문건으로는 주로 '국가세무총국공고(國家稅務總局公告)[2016]제42호'로서 '특수관계기업신고 및 관련자료 관리의 보완에 대한 공고(關于完善關聯申報和同期資料管理有關事項的公告, 이하 '특수관계기업신고'라고 함)'가 있는데, 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실제지배 여부의 판단 기준,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에 대한 세칙규정이다.

2. 한국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법적 규정

한국의 경우 1995년 국조법의 제정 시부터 이미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였고 중국보다 법적 규정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할만한 학설이나 판례도 많이 형성되어 있다.

1995년 한국은 OECD 가입을 즈음하여 경제의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국제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국가간 과세조정문제가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서 대두되었다.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OECD 선진

국들은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등을 통하여 외국계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들 제도들을 적기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시 상대국가와의 세제상의 충돌은 물론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국내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한국의 과세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이들 제도들을 접하지 못한 결과 해외에서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예상치 못한 과세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었다. 한편, 국가 간의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과정에서는 상호주의가 중시되므로 한국에 이와 같은 제도가 없을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당시의 국제조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와 국회는 1995년 말 국조법을 제정하여 동 법률에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등 다양한 국제조세제도를 도입·정비하게 되었다. 현재 국조법 제3장, 곧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27]

한국의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법적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명칭	주요내용
법률	국조법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14-16조)
시행령	국조령	차입금의 범위, 국외지배주주와 차입금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업종별 배수,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원천징수세액 조정, 서식 제출 (제24-28조)
시행규칙	국조법 시행규칙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 증명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 (제7조의2, 3)

27) 국조법 제14조 제1항.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28]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령'라고 함)이 수차례 개정되어 현행 과소자본세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29] 법형식으로 보면 한국의 시행규칙은 중국의 '부문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한국의 국조법령 시행규칙은 실체법에 대응하는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중국의 '세수징수관리법(稅收徵收管理法)' 및 그의 '실시세칙(實施細則)'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에서 정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법률에 따른 위임을 받아 정하게 되고, 대신 법률의 위임 조항에서는 시행규칙의 목적과 그 적용범위 및 영역을 분명히 한다.

Ⅲ. 사례를 통한 양국세제의 효과 분석

위에 살펴본 논리는 다음과 같은 가상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본문은 주로 한중 양국의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비교연구이기 때문에 아래의 사례에서 적용되는 세제는 전부 한중 양국 현행법의 규정이다.

[사례 1]

주주 갑 회사는 거민기업[30](居民企業, 내국법인)인 을의 지주회사인 경우를

28) 한국 헌법 제75조. 시행령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대통령령은 중국의 '행정규장'에 해당한다.

29) 한국 헌법 제95조.

30) 중국 기업소득세법에서는 기업을 '거민기업(居民企業)'과 '비거민기업(非居民企業)'으로 분류한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거민기업'이라 함은 법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 설립되었거나 외국(지역)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관'이 중국 국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한편 '비거민기업'이란 외국(지역)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중국 내에 '실제 관리기관'은 없지만 일정한 '기구·장소'를 중국 국내에 두고 있는 기업 혹은 중국 국내에 '기구·장소'는 두고 있지 않으나 중국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가정한다. 현재 갑은 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세우면서 아래와 같은 투자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방안1: 출자형식으로 을에 대하여 자금을 대주는 것. 따라서 갑은 출자에 대하여 을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

방안2: 차입금의 형식으로 을에 돈을 대여하는 것. 따라서 갑은 을로부터 이자를 받는다.

위와 같은 가정 아래 조세부담만을 고려한다고 할 때 과연 을 회사가 자기자본을 적게 유지한 채 타인자본에 주로 의존한다면 기업집단의 관점에서 항상 유리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각국의 과세제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먼저 상황별로 기업집단 차원의 갑과 을의 전체적 조세부담을 살펴보고 중국과 한국이 각각 다른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때 주주가 대여 방식의 자본조달을 통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위의 예에서 법인세와 지급이자를 차감하기 전에 을 회사의 이익은 100이라고 하자. 이와 같은 가정 아래 다음과 같은 5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자.

[상황1] 갑은 거민기업(내국법인)이고 현재 갑과 을은 모두 보전하여야 할 결손금이 없다.

[표 1]

		방안1 (출자)	방안2 (차입금)	결론
중국	갑	갑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비과세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0이다.[31]	갑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25(=100×25%)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갑은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지 결국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을	을은 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25(=100×25%)의[32]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은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으로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기업소득세부담이 없다.	

한국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각각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기업소득세법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하의 논의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거민기업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비거민기업은 외국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전체적 세금부담	0+25=25	25+0=25	
한국	갑	갑은 을의 지주회사 또는 100% 모회사로서 받아가는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된다[33].	만약 갑과 을에게 적용된 법인세율이 같다면, 갑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20(=100×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갑은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지 결국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을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갑과 을에게 모두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34] 따라서 을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20 (=100×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을은 지급이자를 손금산입으로 당해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부담이 없다.	
	전체적 세금부담	0+20=20	20+0=20	

[상황2] 갑은 비거민기업(외국법인)이다. 이 상황에서 갑의 거주지국은 한중 양국과 아무런 조세조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또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면제나 공제제도가 없다고 가정한다.

31)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26조, 동법 실시조례 제83조. 중국은 조건에 부합하는 거민기업간의 주식배당금 등 '권익성투자' 수익에 대하여 면세한다. 즉 거민기업이 직접투자로 수취한 투자수익을 의미한다. 다만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보유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32)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조, 동법 제28조.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기업 및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각각 15% 및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이외 기업소득세율은 통일적으로 25%로 한다.

33)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이러한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100% 모회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34)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한국은 현재 10%, 20% 및 22%라는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2억 원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법인세율 10%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여기서는 무시하도록 한다.

[표 2]

		방안1(출자)	방안2(차입금)	결론
중국	갑	갑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소득세 7.5(=75×10%)를 납부하여야 한다.[35]	갑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소득세 10 (=100×10%)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주인 갑은 방안2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을	상황1과 일치한다.		
	전체적 세금부담	7.5+25=32.5	10+0=10	
한국	갑	갑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소득세 16(=80×20%)을 납부하여야 한다.[36]	갑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소득세 20 (=100×20%)을 납부하여야 한다.[37]	
	을	상황1과 일치한다.		
	전체적 세금부담	16+20=36	20+0=20	

표 1의 계산결과를 살펴본 바로는 비록 한중 양국의 법인세제에 따라 갑과 을의 전체적 조세부담의 최종결과가 다르지만, 이것은 그저 적용된 법정세율의 차이 때문에 생긴 수치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익금불산입함으로써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자금조달방식을 차입금에 주로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배당이든 이자든 지급하는 쪽과 지급받는 쪽 어쨌든 한 쪽은 세금을 내는 반면 다른 한 쪽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 까닭은 결국 기업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표 2의 결과를 보면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35)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3조, 동법 실시조례 제91조. 비거민기업이 중국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수취한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0%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비거민기업의 거주지국과 중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기업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6)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및 동법 제98조 제1항 제3호. 한국은 외국법인이 받아가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20%의 원천징수세를 물리고 있다.

37)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동법 제98조 제1항 제3호. 한국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받아가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총액의 20%(채권이자라면 14%)라는 세금을 부과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서 언제나 출자형식보다 채권채무라는 형식을 통하여 자회사단계의 세금을 줄일 유인을 받는다. 이것은 법인세 이중과세의 배제는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대부분 나라의 세제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이중과세한다. 한국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익금불산입하고 있지만 외국법인이 받아가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중과세 배제 조치가 없다.[38] 중국 기업소득세법도 마찬가지이다. 곧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일단 거민기업단계에서 25%의 기업소득세를 물리고, 그 후에 주주단계에 가서 주주인 비거민기업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를 또 물리는 것이다.[39] 이리하여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과정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장기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안정적인 자본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자본금과 유사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자회사로서 차입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되므로 전체적인 조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게끔 과소자본 전략을 실시함은 당연하다.

중국은 2008년 이전에 외국인투자자가 외국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였다.[40] 그러나 해당 규정이 신 기업소득세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면서 외국기업의 국내원천 배당소득도 비과세대상에서 이중과세대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실제적 조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절세의 목표는 다국적기업들이 과소자본 수단을 이용하는 데에 큰 동력을 부여하였다.

그러면 주주 간의 배당소득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하였다면 과소자본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 일단 국내법상의 이월결손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자.

[상황3] 갑은 거민기업(내국법인)으로써 현재 보전하여야 할 결손금이 있으나 을은 없다.

38)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소득세법 제56조.

39)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2항.

40) 중국「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 제19조. 이 법은 2008년에 중국 신 기업소득세법의 시행함에 따라 폐지되었다.

[표 3]

		방안1 (출자)	방안2 (차입금)	결론
중국	갑	상황1과 일치한다.	갑은 을 회사로부터 받아가는 이자소득 전부를 결손에 보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41]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보면 갑은 방안2를 선택하는 것이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을		상황1과 일치한다.	
	전체적 세금부담	0+25=25	0+0=0	
한국	갑	상황1과 일치한다.	갑이 당해 사업연도 공제가능할 이월결손금 금액은 사업소득의 80% 즉 80이다. 따라서 갑은 여전히 이자소득의 20%에 대해 법인세 4(=20×20%)를 납부하여야 한다.[42]	
	을		상황1과 일치한다.	
	전체적 세금부담	0+20=20	4+0=4	

표 3과 같은 계산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기업소득세제 하에 모회사인 갑에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자회사인 을은 이익을 갑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보다 이자 형태로 지급하는 편이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을 회사가 지급이자 손금산입으로 공제를 받는 동시에 결손상태인 갑회사도 을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전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갑 회사가 받아가는 배당소득도 이월결손금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거민기업간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래 과세하지 않으므로 갑의 기업소득세부담은 변함없이 0이고 마이너스(-)가 되지 못한다.[43] 이와 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을 회사가 여전히 이에 대하여 기업소

41)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18조. 세금 목적상 기업이 적자가 생길 경우 이를 차기 이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적용기한은 5년이다.

42)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하면 일반적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공제가능할 결손금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43) 이것은 법인세법에서 어느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 곧 '음'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기에 이자 형태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보다 최종적 조세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거민기업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을 높여서 기업소득세부담을 줄이려 하는 과소자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과소자본세제는 외국계기업만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 사이의 과다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국의 같은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을이 이익을 이자 형태로 분배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산입으로 을에 대한 법인세부담은 0이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최종적 조세부담은 갑의 법인세액으로만 결정된다. 한국 현행법에서 내국법인의 결손금공제한도가 해당 사업연도 기업소득의 80%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갑회사가 받아가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4% (=20%×20%) 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셈이다. 이에 반해 배당금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갑에 대한 법인세부담이 0이다. 따라서 을의 법인세 납부금액은 기업집단의 최종적 조세부담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한국 현행법에 의하면 을 회사에 대하여 적용된 법인세율은 언제나 4%보다 높기 때문에[44] 지주회사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자회사에 돈을 대는 형식으로 출자금보다 차입금을 선택하는 것은 기업집단의 입장에서 세금을 줄이는 데에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은 흔히 벌어지지 않는 일이다. 주주법인이 계속 적자를 메워야 할 경우이면 추가 자금의 투입을 고려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만일 주주인 갑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된다면 상황3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전체적 세금부담 차원에서 '0+0=0'라는 구조가 똑같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모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자회사보다 낮으면 자회사가 부채비율을

하여 국가가 세금을 환급하여 주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상세한 것은 윤지현, "부가가치세의 환급거부 '처분'과 법인세 결손금의 감액경정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문제-'음'의 세액이나 소득을 조세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저스티스」 통권 제152호(2016.4), 166-205면 참조.

44)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올려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 할 경향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령 모회사의 법인세율은 10%이고 자회사의 법인세율은 20%라고 하자. 이 상황에서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100의 배당소득을 받아갔다면 자회사 단계의 20의 세금과 모회사 단계의 0의 세금을 합하여 전체적 조세부담은 20으로 나온다. 반면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이 이자의 형식을 갖는다면 자회사 단계 0의 세금에 모회사단계 10의 세금을 더하면 전체적 조세부담은 10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회사가 자기자본보다 차입금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편이 기업전체의 조세부담 관점에서 더 유리하고, 따라서 내국법인이라도 과소자본 수단을 이용할 동력을 낳는다. 결과적으로 모자(母子)회사 간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하였다는 조건과 모자회사에 적용된 세율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동시 만족되어야 기업집단의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 출자를 한 경우나 대출을 한 경우 모두 동일하므로 조세일탈을 목적으로 과소자본을 조장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자회사에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다는 조건은 쉽게 충족될 수 있더라도 이중과세 완전해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한국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모회사가 자회사 투자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한하기 때문이다. 지분이 50%(주권상장법인은 30%) 초과인 경우와 50%(주권상장법인은 30%)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수입배당금액의 50% 및 30%만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45]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완전히 해소하지 않았다. 중국 기업소득세법도 거민기업간 배당소득 세금면제를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6]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후술하도록 한다.

앞의 세 예시 전부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만을 고려한 것이다. 주주가 개인인 경우이면 위와 같은 결론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때 기업소득세법(법인세법) 외에 또는 개인소득세법(소득세법)[47]의 적용문제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일단 개인주주가 거민(거주자)[48]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자.

45) 법인세법 제18조의3.
46) 각주 31 참조.
47)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한국의 「소득세법」에 해당한다.

[상황4] 갑은 거민(거주자)으로서 을 회사의 개인주주이다.

[표 4]

<table>
<tr><th></th><th></th><th>방안1(출자)</th><th>방안2(차입금)</th><th>결론</th></tr>
<tr><td rowspan="3">중국</td><td>갑</td><td>을 회사가 법인단계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75(=100-25)전액을 주주에게 배당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갑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15(=75×20%)[49]을 납부하여야 한다.</td><td>갑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20(=100×20%)을 납부하여야 한다.</td><td rowspan="3">갑은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방안2를 선택하여야 한다.</td></tr>
<tr><td>을</td><td colspan="2">상황1과 일치한다.</td></tr>
<tr><td>전체적 세금부담</td><td>15+25=40</td><td>20+0=20</td></tr>
<tr><td rowspan="4">한국-종합과세</td><td rowspan="2">갑</td><td colspan="2">갑은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인 40%를 적용한다고 가정한다.[50]</td><td rowspan="5">갑은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방안2를 선택하여야 한다.</td></tr>
<tr><td>주주인 갑은 개인 단계에서 26.72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51]</td><td>갑은 40의 소득세납부의무를 진다(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 포함).[52]</td></tr>
<tr><td>을</td><td colspan="2">상황1과 일치한다.</td></tr>
<tr><td>전체적 세금부담</td><td>26.72+20=46.72</td><td>40+0=40</td></tr>
<tr><td rowspan="3">한국-본리과세</td><td>갑</td><td>본리과세[53] 대상인 주주 갑은 11.2(=80×14%)[54]의 원천징수세를 세금으로 부담한다.</td><td>갑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25(=100×25%)의 세금납부 의무를 진다.</td></tr>
<tr><td>을</td><td colspan="2">상황1과 일치한다.</td></tr>
<tr><td>전체적 세금부담</td><td>11.2+20=31.2</td><td>25+0=25</td></tr>
</table>

48)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제1항. '거민'이란 중국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거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만 1년을 거주한 개인을 의미한다. 거민은 중국 국내·외에서 취득한 전부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거민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비(非)거민'은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49)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3조 제5호에 따라 개인은 거민이든 비거민이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 현행법상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방식으로 분리과세되거나 또는 주주의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된다. 종합과세가 되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한국은 현재 배당세액공제(imputation)를 통하여 법인세 부담을 일부 제거하고 있다. 위의 상황4의 같은 경우 을 회사가 기업단계에서 20(=100×20%)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80의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개인주주인 갑에게 배당한다면, 종합과세되는 갑은 80을 배당받으면서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 11.2(=80×14%)를 징수당한 뒤 68.8의 현금을 받게 되고, 종합소득에 포함시킬 금액은 88.8(=80+80×11%)이다.[55] 또 갑은 소득세법상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35.52(=88.8×40%)가 되고,[56] 여기에서 배당세액공제액 8.8(=80×11%)을 공제하면, 결정세액은 26.72가 된다.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11.2를 공제하면,[57] 15.52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58] 결국 종합과세되는 주주인 갑은 법인을 거쳐 버는 소득 100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20(=100×20%)의 세금을, 개인 단계에서 26.72(=11.2+15.52)의 세금을 내게 되어, 도합 46.72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59]

한편 분리과세가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가 배제되고,[60] 따

중국 기업소득세법은 거민기업이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 익금불산입을 하고 있으나 개인소득세법은 거민이 받아가는 배당금에 대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중과세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는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 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50)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51)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주주인 갑은 이미 다른 곳에서 받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고 가정한다. 소득세법 제56조 제4항.

52)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을 받는 사람은 대개 최고세율 구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53)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분리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5항 및 동법 제54조.

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율은 100분의 14이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55) 한국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가산하는 금액 및 배당세액공제의 금액을 11%로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제56조 제1항.

56) 소득세법 제15조.

57)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58) 소득세법 제85조 제1항.

59) 원천징수세를 법인단계에서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면 법인단계에서 31.2, 개인단계에서 15.52가 된다.

60) 소득세법 제56조 제4항.

라서 을 회사가 지급액의 14%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61] 분리과세 배당을 지급받는 자는 이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 배당소득에는 법인세 부담에 더해서 14%의 세금이 지워지게 된다.

한국 소득세법상 금융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있고 이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62]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당연종합과세대상으로서 이자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금융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를 받는다.[63]

한국과 달리 중국의 세제는 전통적 세제(classical system)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인원천소득(corporated-sourced income)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뒤, 그 소득이 분배되어 주주 등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다만 중국은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개인주주가 상장회사로부터 받는 주식배당금에 대하여 차별화된 과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64] 즉 주식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경우 주식배당금의 50%만 과세표준으로 개인소득세액을 계산한다.[65] 물론 주식보유기간이 1달 이하의 경우 조세감면특례 없이 주식배당금의 전액에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중국 전체 기업 가운데 상장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0.0004%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66] 위와 같은 이중과세 배제 조치를 통하여 법인세 부담을 제

6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 제2호, 익명조합원이 받는 분배금은 25%.

6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이다.

63) 소득세법기본통칙 16-26…2.

64) 중국 재정부, 국세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포한 “상장회사 주식배당금의 개인소득세 차별화 정책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上市公司股息紅利差別化個人所得稅政策, 재세[2015]101호).

65) 20%의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10%이다.

66) 2016년 현재까지 중국의 상장회사는 3002개에 불과한 반면 등록된 기업총수는 8000만을 넘었다. 통계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방문날짜: 2017.7.3.
http://www.gov.cn/xinwen/2016-12/10/content_5146025.htm;

거하는 기능이 아주 제한적이므로 중국의 현행법에서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배제 조치가 거의 없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리하여 개인주주가 거민이든 비거민이든 납세의무자로서는 언제나 출자형식보다 대여형식을 통하여 법인 단계의 세금을 줄일 유인을 받는다.

중국이 개인주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별화된 배당소득 과세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하며 단기적인 투자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안한 등락을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67] 그러나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기업소득세율이 개인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세금부담은 언제나 이자소득보다 높다.[68] 따라서 표 4에서 나온 결과대로 중국 현행 세법에 따를 때 개인주주가 거민이더라도 과소자본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정책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는 본문의 연구범위 밖이지만, 적어도 중국 과세당국에서 개인주주에게 귀속된 배당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해 주지 않는 세법구조를 가지면서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여 과다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개인주주에게 가혹한 조세부담을 주었다는 비판을 많이 초래하였다.[69]

표 4는 개인주주가 거주자인 경우에 대한 계산 및 분석이다. 실례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개인주주가 비거주자인 경우이면 중국이나 한국에서 설립된 내국법인에 직접 투자할 때 출자 형식과 대여 형식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최종적 조세부담에 대하여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자.

[상황5] 갑은 비거민(비거주자)인 개인주주이다.

---

http://finance.ifeng.com/a/20160722/14629256_0.shtml

67) 張合, 「經濟政變:中國股災是權貴的合謀」, 财大出版社, 2015년, 301-302면.

68)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은 20%이고 기업소득세율은 25%이다.

69) 李葵, "我国资本弱化特别纳税调整的实证分析", 华东政法大学硕士论文 , 2013년, 35-37면. 또는 方威威, "我国反资本弱化避税问题的探究", 上海海关学院硕士论文 , 2015년, 24-29면.

[표 5]

		방안1(출자)	방안2(차입금)	결론
중국	갑	상황4와 일치한다.		주주 갑은 세금을 줄이려면 방안2를 선택하여야 한다.
	을			
	전체적 세금부담	15+25=40	20+0=20	
한국	갑	갑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6(=80×20%)의 원천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이것은 한국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70]	갑은 이자소득에 대해 20 (=100×20%)의 원천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주주 갑은 세금을 줄이려면 방안2를 선택하여야 한다.
	을	상황1과 일치한다.		
	전체적 세금부담	16+20=26	20+0=20	

한국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는 비거주자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71] 따라서 표 2의 결과처럼 비거주자인 개인주주는 납세의무자로서 언제나 출자형식보다 채권채무라는 형식을 통하여 세금을 줄일 유인을 받는다. 그러나 비록 한국 현행법상 배당세액공제를 통하여 거주자인 개인주주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였으나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얽히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의 일부만을 공제해 주고 있다.[72] 이리하여 상황1, 2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자형식보다 출자기업에 대출하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

실례 중 비거주자 개인이 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이른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외국

70) 한국 소득세법은 비거주자가 받아가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20%의 원천징수세를 물리고 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120조.

71) 소득세법 제56조.

72)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이창희, 「세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5년, 제4절 Ⅰ참조.

인의 투자를 가리킨다. 반면 외국인이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자산을 빌려주거나 증권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것은 외국인간접투자라고 한다.[73]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것보다 시장에 대한 정보와 자금의 제약으로 투자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간접투자 방법을 더 선호한다. 이리하여 비거주자 개인은 과소자본문제와의 관련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Ⅳ. 한중 과소자본세제 적용범위의 차이점

위의 5가지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중 양국의 세제 하에 주주가 출자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 차입금에 주로 의존한다면 투자당사자의 관점에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국제간 투자활동에 있어서는 중국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 탓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차입, 즉 과소자본의 구조를 이용할 유인이 있다. 또는 중국 개인주주와 거민기업간의 투자활동도 같은 문제로, '불입자본', 곧 출자의 형태보다 대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중국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는 이자를 받아가는 자의 내외를 불문하고 비거주자 외에 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유달리 비거주자에 국한되어 있다. 한국 현행세제 하에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가 일부 해소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특히 법인 간 배당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나타남에도,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의 존재라든지 그 밖의 이유로 모회사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거나 모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이 자회사보다 낮은 경우에는 과소자본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과소자본제제가 비거주자만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 불비가 아닌가?

바로 결론 짓기는 아직 이르다. 한국의 법인세법 제28조를 보면, 내국법인에

73) 정종인·박장호,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과제",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 2007년, 21면.

게 적용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내국법인간 과다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제28조의 규율범위에 속한다고 입증한다면 손금불산입 처분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을 여지가 있을 것이다.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위 조문 제1항 제1호에서 채권자불분명이자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채이자가 채권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칙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74]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소득귀속자 불분명 채권·증권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인데 제1호와 대체로 같은 내용이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료 또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따위인 경우를 말하

74) 일반론으로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원천징수세율이 25%이다. 그런데 사채업자는 대개 부자라고 보면 종합소득세율의 최고세율로 세금을 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로서는 이 사채업자의 정체를 알 수가 없고 세금을 매길 길이 없다면, 사채업자가 내는 세금은 원천징수세로 끝나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채권자 개인에게서는 세금을 못 받는 대신에 법인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0.28. 선고 89누3410 판결 참조.

는 것이다.[7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해서는 본문 제3장 제5절 '지급이자'에서 상술하도록 하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건설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으로 비용 추인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손금부인이 아니다.[76]

마지막으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법인이 차입금에 의존하여 업무무관 자산이나 가지급금 등의 비생산적인 자산보유를 억제할 목적으로 이러한 자산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및 간접으로 관련되었다고 계산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 현행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관한 입법취지가 특수관계인 간 차입거래로 인한 부(富)의 부당이전을 방지하는 데에 있지만, 기업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비록 해당 조항 제1항 제4호를 법적 근거로 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의 관계회사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판결도 있지만[77] '업무무관'의 문언의 해석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경영의 특정한 방식을 제한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자금조달 방식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는 판결도 나와 있기 때문이다.[78]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문 제4장 제1절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 부채비율에 관한 규율에 대해서는 세법 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라고 함), 「금융지주회사법」 등 규제도 있다. 즉 지주회사(비은행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79] 이를 어긋나는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

75) 이자, 할인료 또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따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76)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77) 조심2010서2170 판결. 대법원 2000.8.22. 선고 99두 4006 판결; 2004.3.26. 선고 2001두 10790 판결; 2006.2.10. 선고 2005두12527 판결도 같은 뜻.

78) 대법원 2003.3.11. 선고 2002두4068 판결; 2004.2.13. 선고 2002두 11479 판결; 2007.9.20. 선고 2005두9451 판결; 2006.5.12. 선고 2003두7651; 2006.12.26. 선고 2005두1558 판결; 2009.6.11. 선고 2006두5175 팔결 등.

79)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금융지주회사법 제35조.

과징금부과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80] 이리하여 현재 한국의 내국법인이 세금을 줄일 수 있더라도 마냥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과소자본제제가 외국인투자기업만을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국의 조세체계가 국제조세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이자를 지급받는 자를 내외로 구분하여 각각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등 국내법 규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라고 함)상의 과소자본세제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외국법인을 내국법인에서 따로 떼어 내지 않고 통일한 기업소득세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국조법과 같은 별도의 규범체계는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중국의 과소자본세제는 국제간 자본이동 외에 내국인간의 투자활동까지 적용되므로 그 적용범위가 아주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Ⅴ. 결론

과소자본 문제는 주로 국가간 자본이 이동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과세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경우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하였으나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중과세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주주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납세의무자로서는 언제나 출자형식보다 대여형식을 통하여 법인 단계의 세금을 줄일 유인을 받는다.

그러나 배당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여도 내국법인간의 차입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소자본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소득세율에 비하여 법인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과소자본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과소자본세제는 내외를 불문하고 비거주자 외에 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80) 공정거래법 제17조 제4항,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중국의 일원적 입법체계와 달리 한국의 조세법은 국제조세, 특히 소득과세에 관한 일정한 사항들은 기존의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세법은 국내법과 국제법 병행되는 이원적 입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 등 국제조세와 관련된 일정한 쟁점들은 기존의 세법논리와는 매우 이질적인 요소가 많으며 조세조약과 긴밀히 연관된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곧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는 국조법은 외국법인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는 과소자본세제를 비롯한 사항들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 조항은 국내세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81] 물론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의 특별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조세조약과 국조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82] 따라서 과소자본 문제는 국제조세에 속하는 것이기에 한국의 과소자본세제는 당연히 외국계기업만 적용대상으로 삼는다. 내국법인간의 차입거래에서 자회사가 지급이자형식으로 이익을 지주회사 내지 모회사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는 한국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해석문제로 돌아간다.[83] 다시 말하면 중국 기업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과소자본세제는 한국 국조법상의 과소자본세제와 국내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등을 합쳐서 부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라	법적 근거	세제	주관적 적용범위
한국 (이원적 체계)	법인세법 제28조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국내)특수관계인
	국조법 제3장	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
중국 (일원적 체계)	기업소득세법 제46조	과소자본세제	특수관계인

81) 국조법 제16조 제1항.
82) 국조법 제28조.
83)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參考文獻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2015.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5.

이경근·서덕원·김범준,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2014.

김인근,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광교이택스, 2007.

김준석, 국제조세실무(개정증보판), 영화조세통람, 2007.

순윤환,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해설과 실무, 조세통람자, 1996.

이창희, “과소자본세제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법학」 제28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12).

이창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5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3).

이진영, “국제적 자본이동과 과소자본세제”, 조세법연구 14-1, 2008(4).

이영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규칙에 관한 연구: 현행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9.

윤지현, “부가가치세의 환급거부 ‘처분’과 법인세 결손금의 감액경정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문제-‘음’의 세액이나 소득을 조세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저스티스」 통권 제152호, 2016(4), 166-205면.

정종인·박장호,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과제”,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 2007.

刘剑文,「国际税法学（第三版）」, 北京大学出版社, 2013.

刘剑文,「国际所得税法研究」,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0.

刘剑文,「《企业所得税法》实施问题研究：以北京为基础的实证分析」, 北京大学出版社, 2010.

刘剑文主编,「财税法学前沿问题研究5：法制财税与国家治理现代化」, 法律出版社, 2016.

熊伟·刘剑文,「税法基础理论」, 北京大学出版社, 2004.

徐洪才主编,「中国资本运营经典案例(下册：问题篇)」, 清华大学出版社, 2005.

罗慰年,「半资本论：半资本主义与中国社会」, 世界华语出版社, 2016.
李国建,「税收制度改革与发展研究」, 山东人民出版社, 2004.
張合,「經濟政變:中國股災是權貴的合謀」, 财大出版社, 2015.
廖益新·邱冬梅, "利息或是股息－资本弱化规则适用引发的定性识别冲突问题", 暨南学报, 2017（4）.
赵德芳 , "对资本弱化避税案例的思考", 税务研究总第296期, 2016（1）.
刘剑文·丁一, "逃税之法理探索（上）", 涉外税务, 2016（8）.
范昕林, 易娜, 周冬丽, "实行统一的法人所得税的必要性, 加行性和紧迫性",「税务研究」, 2006.
李蕤, "我国资本弱化特别纳税调整的实证分析", 华东政法大学硕士论文, 2013.
方威威, "我国反资本弱化避税问题的探究", 上海海关学院硕士论文, 2015.
OECD,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13.
OECD Commitee on Fiscal Affairs, "Thin Capitalization", 1987.
OECD, "Thin Capitalization Legislation: A Background Paper for Country Tax Administrations(Initial Draft)", 2012.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in Korea and China

XU LIAN
Beijing Dentons Law Offices, Lawyer

The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is evaluated as a tax policy to maintain a healthy capital market by regulating the amount of taxes in which the domestic corporation raises the ratio of taxes to the form of

interest in the form of interest, and thus regulates the ratio of unreasonable debt to the company's financial structure. Today, most of the tax authorities in China and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have set up the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and the form is not magor different. However, the coverage of China's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applies to residents other than non-residents, regardless of whether the recipient receives interest, whereas Korea is limited to non-resident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s of the two countries' taxation through the form of virtual cases based on the current laws of both countries and examine why there is such a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conclusion, Korea's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applies only to foreign-invested companies because Korea's tax system has a separate discipline system that applies only to international taxation. In other words, Korea classifies those who are paid interest as internal and external, and applies different regulations such as domestic corporation tax legislation, such as the corporation tax law and the non-deduction system, as well as the under capital tax system under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ct". On the other hand, China does not separate foreign corporations from domestic enterprise but regulates them under a unified corporate income tax law. As a result, China's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is considered to be very broad, as it applies to investment activities among residents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Key words : Thin Capitalization, Taxation Regulation of Thin Capitalization, Korea, China